

特許協力條約 (P C T) 概要 < I >

① PCT 가 署名되기까지

國際特許機構條約(PCT)은 美國이 主動이 되어 1970年 워싱턴에서 20個 關係國들이 署名하였다. 이 署名國들은 一部開發途上國도 포함된 이른바 技術先進國들이며 그 후 1975년에는 미국, 76년에는 西獨이 批准했고 개발도상국들이 비준한 나라도 있다.

PCT를 構想하게된 表面的인 理由는 100餘個 國이나 되는 特許制度 保有國들이 그 法制가 서로 差異가 있으므로 特許 許與節次, 方式 등이 複雜하여 出願人이 書類를 作成하는데 큰 困難을 겪고 있으므로 이 苦役을 덜어보자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 보다는 科學技術이 進步하여, 複雜해지고 또한 出願도 急增하여 各國間의 技術交流가 必要할뿐더러 同一發明의 多數國에의 출원이 顯著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對應策을 世界的인 視野에서 講究하자는데에 더 큰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유럽 30여개국들은 1959년 유럽理事會(EC)에서 유럽共同體統一-特許法の 成案作業을 開始했고 1962년에는 統一的인 유럽特許法の 1次草案이 끝났다. 그러나 EC加盟國內의 意見이 통일되지 않아 1965년부터 中斷狀態에 들어갔다.

그후 1966년 9월에 열린 파리條約執行委員會에서 美國代表의 提議에 따라 知的所有權國際合同事務局(BIRPI)은 出願人과 特許廳의 힘을 덜기 위한 措處를 파리조약의 精神에 비추어 檢討하자는 內容을 議決하였다.

이에 따라 BIRPI는 美, 英, 佛, 西獨, 蘇, 日 등 6개국 및 國際特許協會(IIB)의 대표들과 協議하고 1967년에 條約草案을 작성하여 數次의 專門家會議 등을 거쳐 1969년 7월에 最終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을 갖고 1970년 5월부터 6월까지 두달동안 워싱턴에서 外交會議을 열고 6월19일 미국 등 20개국이 Patent Co-operation Treaty (特許協力條約)에 署名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PCT도 그후 踏步狀態에 머물게 되자

관계국들이 1973년에 유럽特許條約(EPC)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로써 EPC는 8년만에 다시 추진되게 된 것이다.

EPC가 다시 陽動함에 따라 刺戟을 받은 PCT도 1970年末 現在 35個國이 서명에만 그쳤다가 1975년 11월 미국이 批准하였고 1976년 7월에는 西獨이 비준하였다.

PCT의 發効條件은 8개국이 正式加入하거나 비준해야 하며 그 半數 以上の 나라가 一定基準 以上の 特許出願에 到達해야 한다. 즉 특허출원 件數, 外國特許의 출원件數,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특허출원을 받아들인 수가 所定規定에 이르러야 한다.

현재의 時點에서는 英, 佛, 蘇, 日,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벨지움, 오스트레리아 등 11개국중에서 2개국이 비준하던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조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978년쯤에는 발효하리라는 것이 一般的인 觀測이며 대체로 EPC와 비슷한 時期에 발효될듯 하다.

PCT 조약에 서명한 35개국은 다음과 같다.

美, 英, 西獨, 佛, 伊, 日, 蘇, 알제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바티칸, 헝가리, 에이레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아랍聯, 유고슬라비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지움, 이란, 코트디브와르, 룩셈부르크, 말라가시, 모나코, 네덜란드, 루마니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② PCT와 先·後進國關係

PCT가 목적하는 費用의 節減과 省力化에는 開發途上國들인 技術後進國으로부터 全幅的인 支持는 얻지 못하고 있다.

즉 1970년의 PCT 條約署名當時의 外交官會議 席上에서 開途國그룹에 끼는 이스라엘代表가 先進國에서 개발도상국에의 技術援助를 규정하는 條項을 設定해야 한다는 提案이 나와 다시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協議하였다. 이 자리에서 美國代表가 이 문제는 WIPO에서 取扱함이 適切한 手

段이 되겠다고 反對했으나 西獨과 日本만이 贊成했을 뿐 成事치 못하고 結局 조약속에 「技術的業務의 提供」이란 標題로 1章 3條를 挿入하였다.

이같은 규정은 國際事務局이나 그 委託를 받은 國際機關이 開發途上國 政府에 대하여 技術情報를 實費 또는 그 以下の 廉價로 제공할 것과 技術援助委員會를 設立하여 개발도상국의 特許制度 發展을 위한 人的, 物的 援助를 규정하였고 더우기 이 規정을 遂行하는데 隨伴하는 財政은 PCT의 一般財政과는 別途로 造成 負擔하게끔 明文化한 것이다.

이 규정은 PCT의 당초 목적과는 性格을 달리하는 不自然스러운 것이라고 기술선진국측에선 主張하였으나 多數의 힘에 눌려 PCT 技術援助中間委員會가 이미 6회나 열렸다. 더우기 기술후진국들이 提唱하고 있는 파리條約의 改正要求에도 적지 않은 影響이 미칠것도 예상된다.

③ PCT의 目的

PCT가 내세운 主目的은 前述한바와 같이 同一發明의 複數國에의 特許出願에 있어 出願인과 各國特許機關의 重複努力을 國際間的 協力으로서 節減하고 可能한 限 方式과 內容(Form and Contents)을 統一化하자는 것이며 副次的인 목적은 이 條約에 따른 特許協力으로서 개발도상국의 特許制度 發展에 寄與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國際出願, 國際調査, 國際公開, 國際豫備審査의 4個 原則이 明示되었는데 그 가운데 국제조사와 국제출원은 PCT를 이용하는 출원전제에 대하여 반드시 行해지며 例外的인 출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든 출원이 국제공개의 對象이 된다.

PCT의 第1章에 규정된 국제조사, 국제출원, 국제공개는 PCT의 第1段階라고 불리우며 국제예비심사의 節次는 第2章에 규정되어 제2단계라고 불리운다. 제2단계는 協約國이 제2장의 規정에 拘束되기를 不願하면 留保할 수가 있다. 현재·美·西獨·日등은 유보를 宣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장에 구속되는 나라에의 출원도 출원인이 이 規정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제2단계는 任意的인 條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國際出願은 출원인이 출원하려는 나라를 指定하여 한나라에 一定樣式에 따라 출원하면 지정된 複數國에 각각 출원된 것과 동일한 効力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 출원은 原則的으로 출원인이 居住하거나 國籍國家의 特許廳에 제출한다.

이같이 출원된 국제출원은 國際調査機關에 보내져 국제조사를 받게 된다. 국제조사는 현재 各國의 特許청이 獨自的으로 進行하고 있는 先行技術調査를 한곳에서 취급함으로써 증부되는 노력을 절감하는 동시에 출원인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新規性이 進歩性의 判斷에 도움을 주고 그 출원의 進行이나 取下의 決斷資料로 삼게 하려는 것이다.

국제조사는 일정한 要件을 갖춘 特許청이나 政府間 條約에 따른 국제기관중 總會에서 選定한 기관이 취급하며 그 기관은 국제조사기관이라고 불린다. 그 조사 結果는 國際調査報告로 取合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한편 출원내용과 더불어 國際的으로 公開한다.

또한 加盟國이나 출원인으로서도 任意的 節次인 國際豫備審査는 제1장의 절차와는 別個의 것이다. 즉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에 대해 출원인으로부터 所定の 樣式에 따라 일정한 資格을 갖춘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해 심사결과를 이용하는 1 이상의 協約國을 선택하여 청구함으로써 開始된다.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PCT의 제2장에 구속받는 締約國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國民이어야 하나 그 이외의 출원인에 대해서도 청구자격을 주도록 총회가 결의할 수도 있다.

국제예비심사의 主目的은 그 出願發明의 新구성, 진보성, 産業上의 利用性 有無의 3가지 側面에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見解를 表明하는 것일 뿐 斷定的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국제예비심사에 의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작성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발송되고 다시 選擇國에 傳達되어 國內法에 따른 실사에 이용되는 것이나 선택국의 特許청에 影響을 미치지 는 못한다.

(계 속)

(C 記)